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5. 12  
운영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4월 30일 박정자 의원의 6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5월 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박정자 의원)

### 가.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이 '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등의 변경
  - 현지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숙박료
- 일비 및 숙박료의 현실화
  - 일비(1일당)
    - ┌ 의장, 부의장 6,500원 → 10,000원
    - └ 의원 6,500원 → 10,000원
  - 숙박료(1야당)
    - ┌ 의장, 부의장 37,500원 → 41,000원
    - └ 의원 18,000원 → 19,500원

## 3.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전문위원 : 허 영 훈)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 제15247호, 1996. 12. 31)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국내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되고 일부 지급비용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 조례중 구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지급비용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 및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비로 명칭이 변경된 현지교통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숙박료는 37,500원이던 의장, 부의장 숙박료를 41,000원으로, 18,000원이던 의원의 숙박료를 19,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박정자 의원의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년월일 : '97. 4. 30.

제 출 자 : 박정자의원외6인

### 1. 제안이유

○ 국내여비 규정이 '96. 12.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리구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등의 변경

- 현지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숙박료

나. 일비 및 숙박료의 현실화

- 일비(1일당)
  - 의장·부의장 6,500원 → 10,000원
  - 의원 6,500원 → 10,000원
- 숙박료(1야당)
  - 의장·부의장 37,500원 → 41,000원
  - 의원 18,000원 → 19,500원

###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나. 국내여비규정('96. 12. 31 개정내용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항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7조 1항 별표1 구분란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며, 의장·부의장 및 의원 일비 “6,500”을 “10,000”으로 하고 동 구분란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의장·부의장 “37,500”을 “41,000”으로, 의원 “18,000”을 “19,500”으로 한다.

제8조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1> 비고란의 제1호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 (안)																																
<p>제5조(여비의 종류)</p> <p>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p> <p>제7조 1항 (생략)</p> <p>제8조 .....</p> <p>..... <u>현지교통비</u> .....</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내여비지급기준표 -----</p> <p>&lt;별표1&gt;</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현지교통비 (1일당)</th> <th style="width: 25%;">숙박비 (1야당)</th> <th style="width: 35%;">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장</td> <td>6,500</td> <td>37,500</td> <td>25,000</td> </tr> <tr> <td>부의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의원</td> <td>6,500</td> <td>18,000</td> <td>18,000</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u>현지교통비</u>와 식비만을 지급한다.</p> <p>2. &lt;생략&gt;</p> <p>3. &lt;생략&gt;</p> <p>4. &lt;생략&gt;</p>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6,500	37,500	25,000	부의장				의원	6,500	18,000	18,000	<p>제5조 (여비의 종류)</p> <p>① .....</p> <p>..... <u>일비, 숙박료</u> .....</p> <p>.....</p> <p>제7조 1항 (현행과 같음)</p> <p>제8조 .....</p> <p>..... <u>일비</u> .....</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내여비지급기준표 -----</p> <p>&lt;별표1&gt;</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일비 (1일당)</th> <th style="width: 25%;">숙박료 (1야당)</th> <th style="width: 35%;">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장</td> <td>10,000</td> <td>41,000</td> <td>25,000</td> </tr> <tr> <td>부의장</td> <td></td> <td></td> <td></td> </tr> <tr> <td>의원</td> <td>10,000</td> <td>19,500</td> <td>18,000</td> </tr> </tbody> </table> <p>비고</p> <p>1. ....</p> <p>.....</p> <p>..... <u>일비</u> .....</p> <p>2. &lt;현행과 같음&gt;</p> <p>3. &lt;현행과 같음&gt;</p> <p>4. &lt;현행과 같음&gt;</p>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10,000	41,000	25,000	부의장				의원	10,000	19,500	18,000
구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6,500	37,500	25,000																														
부의장																																	
의원	6,500	18,000	18,000																														
구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10,000	41,000	25,000																														
부의장																																	
의원	10,000	19,500	18,000																														